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0
----------	------

제출일자 : 2016. 8.

제 출 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위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함
- 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위탁관리하는 시설명이 명시됨으로 별표1의 세부시설명을 삭제하고 목적사업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제19조(사업)를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공원·유원지 및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7. 25. ~ 8. 14.(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본문을 제외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공원·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9조(사업)</b>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u>별표 1의 시설 관리 및 운영</u></p> <p>2.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u></p> <p>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b>제19조(사업)</b> ----- -----.</p> <p>1. <u>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u></p> <p><b>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b></p> <p><b>3.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b></p> <p><b>4. 공원·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b></p> <p><b>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b></p> <p><b>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p> <p><b>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b></p>
<p><b>【별표 1】</b>  <b>시설명(제19조 제1호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li> <li>○ 달성문화센터</li> <li>○ 한일우호관</li> <li>○ 사문진 역사공원</li> <li>○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화원자연휴양림</li> <li>○ 하천구역내(하빈지구) 체육시설물</li> <li>○ 금호강 고수부지내 체육시설물</li> <li>○ 화원명곡체육공원</li> <li>○ 달성강변야구장</li> <li>○ 달성종합스포츠파크(달성국민체육센터, 현풍전천후 게이트볼장)</li> <li>○ 공공체육시설(화원게이트볼장, 군민운동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군민체육관)</li> <li>○ 공원관리(성서5차, 테크노폴리스)</li> <li>○ 동네체육시설</li> <li>○ 화원동산</li> </ul>	<p>&lt;삭 제&gt;</p>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6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